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995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명동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(행위의 금지)를 위반하여 행정처분(시정명령 및 벌점처분)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제 목 :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

2. 법적근거 :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

3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허가번호	성 명	점용위치	주 소	비고(처분내용)
1	명동길-63-A	심*영	명동길 17	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21길	시정명령 및 벌점30점
2	명동길-71-B	오*순	명동길 9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39번길	시정명령 및 벌점30점

4. 공고기간 : 2023. 11. 07. ~ 2023. 11. 21.(14일간)

5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6. 공고내용

○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명동 허가제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실명제 허가조건」 11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」 제9조(행위의 금지)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**행정처분**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○ 또한, 동일사항 4회 위반 및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 120점 이상 시 즉시 허가취소,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5회 이상이거나 누적벌점 100점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**「행정심판법」**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**「행정소송법」**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 기준
-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
· 1회 위반 시 : 시정명령 및 벌점 30점 · 2회 위반 시 : 영업정지 15일 및 벌점 30점
· 3회 위반 시 : 영업정지 20일 및 벌점 30점 ☞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즉시 허가취소
· 4회 위반 시 : 허가취소 · 허가기간 내 누적벌점 120점 시 : 허가취소
-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5회 이상이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: 기간연장 제한

○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(☎02-3396-60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2023. 11. 07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